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있어,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를 “있어 정보처리 업무”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해당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제5항 중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설비를 활용하여,”를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을 반영하여,”를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본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제4조제6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를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상”을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내용상의”로,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외”를 “국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는,”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으로,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을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30영업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반기

현황을 해당 연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회사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나.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업무 및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정보처리·전산설비”를 “정보처리”로, “‘업무위탁운영기준’,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을 “‘업무위탁 운영기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u>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은행법」에 따른 <u>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u></p> <p>2. ~ 12.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전산설비</u>”라 함은 <u>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 ----- ----- -----<u>있어 정보처리 업무</u>----- ----- -----.</p> <p>제2조(정의) ----- -----.</p> <p>① ----- -----.</p> <p>1.-----<u>은행</u></p> <p>2. ~ 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금융거래정보</u>”라 함은 <u>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u></p>

⑤ “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한다.

⑦·⑧ (생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금융회사 (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해당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를 의미한다.

⑤ -----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

⑥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삭제>

⑦·⑧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의 인가등을 신청한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 관련 법령상 인가등의 결정 기한에는 해당 위탁의 적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외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간에 체결하는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제2조제6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으로 본다(기타 금융회사가 국외 지점과 용역 또는 전산시설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①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수탁하는 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

-----.

② -----

----- . <후단 삭제>

<삭 제>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① -----

----- 경우 -----
----- . <단서 삭제>

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설비의 국외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 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

2.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 다만, 금융이용자군 및 취급상품의 특성상 국경간 이동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

4. 해외에 두는 경우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전산설비

5. 상기 각 호의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전산 보안설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설비 위탁 신청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 확보

2.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전산설비 보호대책 구비

3.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및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구제절차 구비 여부

4. 전산설비 운영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통과 여부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제7조(보고) ① -----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반기현황을 해당 연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회사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

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30영업일-----

1. ~ 6. (현행과 같음)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② 금융회사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또는 수탁 상대방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 설>

<신 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반기 현황을 해당 연도 7월 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협회 등이 회원 금융회사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

